

# 해외건설협회 - 한국기술사회 업무협력 약정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기술사회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우리 기업 및 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며, 건설기술인의 해외경력 활용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재육성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'협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인프라·에너지 및 환경분야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활성화와 해외 경력자 활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업무협력의 범위)

양 기관은 다음 각호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, 협력한다.

1. 해외 인프라·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타당성조사(F/S), 마스터플랜(MP) 등 공동 참여 및 추진
2. 주요 해외 발주처 인사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국내 연수 및 교육 훈련 협의 및 공동 개최
3.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인재육성
4. 건설기술인의 해외경력 관리 및 활용
5.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## 제3조 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한다.

#### 제4조 (협약의 변경)

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호 동의 하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5조 (신의성실)

양 기관은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 협의하여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수행한다.

#### 제6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·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#### 제7조 (비밀유지의 의무)

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, 유출시켜서는 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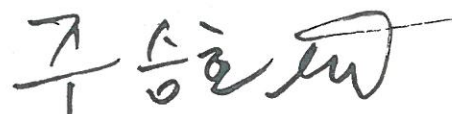
#### 제8조 (일반사항)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1년 4월 23일



해외건설협회  
회장 이건기



한국기술사회  
회장 주승호